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05452(본소), 2019가단550506(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청구]

---

##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이강길

**변론 종결**2021. 2. 23.

**판결 선고**2021. 10. 2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87,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70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8,798,9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 주식회사 C, 수급인 주식회사 D, 하수급인 피고로 된 의정부시 소재 E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참여(성과급)계약서

1. 발주자 : 주식회사 C

2. 공사명 : 의정부 E 신축공사

시공참여공사명 : 타일공사

3. 공사장소 : 의정부시 F

4. 공사기간 : 2017. 3. 1. ~ 2018. 2. 28.

5. 계약금액 : 394,000,000원(세부사항 내역서 참조)

6. 대금의 지급 :

가. 기성부분금 : 월 1회 기성 청구 익월 지급, 발주처 수령 후 지급

7.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9. 하자담보책임기간 : 발주처 준공일로부터 3년

10.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의 0.3%

※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해 성과급제 시공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 현장 설계변경 시 내역서 단가를 반영하기로 한다.

※ 특기사항

1. 원고는 노무비 내역서 및 자재비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에 당 현장의 추가공사비 수령 시 피고가 공과잡비 5% 공제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 10%를 시공사에서 수령 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 수령 후 즉시 지급한다.

수급인 피고

시공참여자 원고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세부사항 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비용이 합계 394,943,500원(재료비 212,927,500원, 노무비 182,0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인 G이 2018. 7. 20.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4호증)에 첨부된 하도급 정산내역서(이하 '을4 정산내역서'라 한다)는 피고와 D사이의

정산서류인데, 위 정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합계 369,480,500원(재료비

204,323,500원, 노무비 165,15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사 항목 중에 '동절기 공사(타일 인건비 20%) 노무비 5,548,000원, 점자블럭 추가시공 750,000원, 민원처리(석재시공) 4,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담당직원인 H이 2018. 8. 24.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6호증)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이하 '갑6 정산내역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합계 402,840,548원(재료비 205,033,548원, 노무비 187,407,000원, 경비 10,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사 항목 중에 '동절기 공사(타일 인건비 20%) 노무비 15,000,000원, 점자블럭 추가시공 750,000원, 민원처리(석재시공) 4,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D은 2018. 10. 22.경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D으로부터 동절기 공사 노무비 및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점자블럭 추가시공, 석재시공)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갑6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바, 갑6 정산내역서상 공사대금 402,840,548원과 그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503,354원 및 위 정산내역서에서 임의로 삭제된 타일공사 노무비 합계 25,971,000원을 합한 449,314,90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449,314,90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3,608,282원을 뺀 나머지 55,706,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1) 피고와 D 사이의 최종 정산서류인 을4 정산내역서 중에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을 떼어내어 정리한 을 제7호증(정산내역서, 이하 '을7 정산내역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바, 을7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355,654,500원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고(일부 미시공), 위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재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일부 공사(타일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의 계약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D을 연결하여 주고, 피고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D으로부터 추가공사비 5,300,000원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 5,548,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대금 355,654,5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총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93,608,282원과 세금 및 보험료 대납분 합계 845,137원을 더한 394,453,419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355,654,5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차액인 38,798,91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특기사항 제2, 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의 10% 및 추가공사비에서 공과잡비 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의 10% 상당액인 2,774,000원과 추가공사비의 5% 상당액인 26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기성금 청구에 의한 기성금 지급 약정, 계약보증금 약정, 지체상금률 등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D의 담당직원 G이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제1호증의 4),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갑6 정산내역서의 각 제목은 '하도급 정산내역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인 정산내역표의 항목 중에도 '하도급금액', '증감(하도급)'란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에는 원고와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서 수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를 재하도급인, 원고를 재하수급인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공사대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정산내역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갑 제4호증(정산내역서)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갑6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되 그 중 일부 항목을 수정 및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을4 정산내역서 중 원고가 공사한 부분을 따로 정리한 문서인 갑6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을4 정산내역서 중 피고의 담당직원의 착오로 과다하게 공사비용이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 문서인 을7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갑6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D의 담당직원인 G이 2018. 7. 20.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을4 정산내역서는 피고와 D 사이의 최종 정산서류라는 것이고, 위 정산내역서 중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항목 및 금액은 을7 정산내역서의 항목 및 금액과 일치한다. 을4 정산내역서 및 을7 정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동절기 공사(타일 인건비 20%) 노무비 5,548,000원, 점자블럭 추가시공 750,000원, 민원처리(석재시공) 4,500,000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179,686,500원, 노무비 186,766,000원 합계 366,45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이메일로 갑6 정산내역서를 보냈다. 위 정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동절기 공사(타일 인건비 20%) 노무비 15,000,000원, 점자블럭 추가시공 750,000원, 민원처리(석재시공) 4,500,000원, 석재 재발주 10,400,000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205,033,548원, 노무비 187,407,000원, 경비 10,400,000원 합계 402,840,54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을4 정산내역서 및 을7 정산내역서와는 상당수 항목 및 금액이 상이하다.

③ 을4 정산내역서는 D이 피고에게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가 을4 정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갑6 정산내역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합의된 정산내역서일 가능성이 높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갑6 정산내역서를 보낸 이후인 2018.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물량 및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에 정산내역서(을 제1호증의 4, 이하 '을1-4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정산내역서는 갑6 정산내역서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은 그 항목 및 금액이 대동소이하고, 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 및 추가공사비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⑤ 피고가 제출한 각 정산내역서, 즉 피고의 담당직원 H이 2018. 8. 24. 원고에게 보낸 갑6 정산내역서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발송한 을1-4 정산내역서 및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을7 정산내역서는 각 구체적인 공사 항목 및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없다.

⑥ 을1-4, 갑6 각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각 항목의 물량 중 늘어난 것이 있을지언정 감소된 것이 거의 없는 반면, 그 이후 제출된 을7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각 항목의 물량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감소되었다. 게다가 피고는 을1-4 정산내역서에서는 각 타일압착붙임 관련 노무비 합계 약 26,000,00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하였다가 을7에서는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기재된 항목을 부인하였다가 번복하여 인정하는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정산된 공사대금은 '동절기 공사(타일 인건비 20%) 노무비 15,000,000원, 점자블럭 추가시공 750,000원, 민원처리(석재시공) 4,500,000원'을 포함하여 재료비 205,033,548원, 노무비 187,407,000원, 경비 10,400,000원 합계 402,840,5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2,840,54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3,608,282원을 뺀 나머지 9,232,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갑6 정산내역서에서 삭제된 타일공사 노무비 합계 25,97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정산내역서로 보는 갑6 정산내역서상 위 타일공사 인건비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다른 공사 항목의 공사금액에 위 타일공사 인건비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스스로 을7 정산내역서에서 위 인건비 부분을 다시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내역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정산내역서가 아니고, 위 정산내역서에서는 다른 항목의 공사금액이 감축되어 결과적으로는 갑6 정산내역서에 비하여 전체 공사금액이 감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타일공사 인건비 합계 25,97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원고는, 갑6 정산내역서상 공사대금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503,354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5호증)에서 원고의 통화 상대방인 H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고 직원에 불과한 점, ③ 위 녹취록에서 원고는 '옛날에 용인도 타일 들어갈 때 타일 자재값에 플러스해서 부가세가 있었던 것이고, 부가세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의정부도 타일 자재비에 부가세가 회사에서 줬지만은 나한테 다 공제했던 말이며, 그거는'이라고 말하여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의 계약으로서 피고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추가공사비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지급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시공참여방식의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에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의 10% 상당액인 2,774,000원과 추가공사비의 5% 상당액인 26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당초 갑6 정산내역서상 동절기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2019. 5. 9.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절기 공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갑6 정산내역서상 동절기 공사대금의 절반인 7,500,000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20. 4.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을7 정산내역서상 동절기 공사대금 5,548,000원의 절반인 2,774,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동절기 공사대금의 경우 계절적 특성상 노무비가 상승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노무비 상승분 등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가 그 추가 지급금의 5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작성한 갑6 정산내역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제시한 것이고, 갑6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동절기 공사대금의 50%와 추가공사비의 5% 상당액을 다시 감액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무비 및 추가공사비를 각 일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근로자들의 각종 세금 및 보험료 합계 845,137원도 기지급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출력한 근로자들의 2018. 2. 분 및 2018. 3. 분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합계 845,137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45,137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8. 5. 초순경 H에게 40,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8. 40,000,000원, 2018. 8. 29. 69,157,382원, 2018. 9. 21. 3,699,087원 등 위 요구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40,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와 H 사이의 위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갑 제5호증)의 표지에는 녹음일시가 2018. 5.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8. 40,000,000원, 2018. 8. 29. 69,157,382원, 2018. 9. 21. 3,699,0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녹취록(갑 제5호증)의 녹음일시가 실제로는 2018. 9. 말경이나 녹취소와의 의사소통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녹음일시가 녹취록에 기재된 대로 2018. 5. 초순경이라면, 원고가 피고 측에 40,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3배에 가까운 금액인 112,855,969원을 지급한 것인데, 그 경위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02,840,54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3,608,282원과 세금 및 보험료 대납금 합계 845,137원을 뺀 나머지 8,387,129원(= 402,840,548원 - 393,608,282원 - 84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2018. 4. 30.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87,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이 많다거나 미시공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오히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선우**